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94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김도읍·조지연·장동혁

박성훈 • 박형수 • 구자근

신동욱 • 조배숙 • 권영진

인요한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 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 생과 가해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중 "경찰관을 둘 수 있다"를 "경찰관(이하 "학교전담 경찰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폭력 예방활동
-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	
담하는 <u>경찰관을 둘 수 있다</u> .	<u>경찰관(이하 "학교전</u>
	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u>한다</u> .
<u><신 설></u>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u>선도</u>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u>수집</u>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u>및 해체</u>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
	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u><신 설></u>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u>상호 협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④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u>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	⑤ 그 밖에

② <u>세1앙에 따는</u> 악교선담경찰 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⑤</u> 그 밖에-----